



제429회국회(정기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감사·수사·조사 등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민·형사소송의 지원 근거 마련〉

■ 강선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375호)

2025.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선영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7. 9.
3. 회부연월일 : 2025. 7.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소방기본법」은 경찰·소방공무원이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국가가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송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감사·수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소송의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는 소극적인 직무 수행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감사·수사·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이 업무 수행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소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공무원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4 신설).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감사·수사·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이 업무 수행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민·형사소송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76조의4(소송 지원) 소속 기관장은 <u>감사·조사·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된 소송부터 적용한다.	

2. 검토의견

현재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를 개별 법률에서 마련하고 있는데,

특정직공무원의 업무 중 경찰관 직무집행, 소방관의 소방활동 및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 법률에서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개별법상 소송 지원제도 비교》¹⁾

구분	「경찰관 직무집행법」	「소방기본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지원 주체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교육감
지원 대상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직무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의 변호인 선임 등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 활동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의 변호인 선임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 률적 분쟁에 대한 민·형 사상 소송비용의 지원 (공제사업 운영·관리)
도입	2021년 신설	2017년 신설	2023년 신설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4(소송 지원)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이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

제16조의6(소송지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2조(교원보호공제사업)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그러나,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소송 지원에 관하여 법률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하위 법령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대통령령)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운영기관의 장(소속 장관)이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3항(대통령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²⁾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이하 “교원보호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관리할 수 있다.

②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지원 및 구상권 행사 지원(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상해·상담·심리치료 비용 지원(상담·심리치료 비용 지원의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병가 또는 휴직을 사용한 이후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 보호 서비스 지원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의 지원

③ - ④ (생략)

2)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영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7조의2(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위한 보험계약) ①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부담하는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제18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생략)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2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

개정안은 감사·수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경우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송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해 소극적인 직무수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소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국가공무원의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공무원 소송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은 적용범위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³⁾ 직무수행과 관련된 소송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경우 행정부 외 헌법기관 소속의 국가공무원도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7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④ - ⑤ (생략)

3)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영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다만, 개정안은 소송 지원 대상을 감사·조사·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직무에 국한하고 있는데,

하위 규정에서는 직무 종류를 특정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바, 법률에서 지원 대상을 감사·수사·조사 등 일부 업무로 좁히는 것은 정당한 직무 수행을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소송 지원의 대상이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제한할 경우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 대상을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임.

인사혁신처는 소송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감사·수사·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안정적·적극적 업무수행을 유인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이나, 소송지원 대상 업무의 범위를 감사·수사·조사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업무에 한정하는 것은 소송에 노출되어 있는 다른 업무 수행 공무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

현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 등을 통해 직무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일정한 요건 하에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국가공무원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되, 소송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이나 절차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므로 입법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2